

1. 개정이유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전기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19972호, 2024.1.9. 공포, 2024.7.10. 시행)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2층전기버스의 규격·기준 규정 신설(안 제2조의3 신설)

2층전기버스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버스와 2층대형승합차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2층전기버스의 규격·기준)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층 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.

1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
2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2층전기버스의 규격·기준)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층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.</u> <u>1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</u> <u>2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</u>